
입 법 정 보

2017-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민안전처)	5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민안전처)	6
4.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6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7
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8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8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8
10.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9
12.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
1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
1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8.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3
2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2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5
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5
2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6

2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26.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8
27.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8
2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8
29.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
30.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31.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22
33.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22
3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3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23
36.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3
3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3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24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5
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6
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42.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7
43.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7
4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8
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8
4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29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	29
4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30
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31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3
5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4
5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36

5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36
5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6
5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7
56.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8
5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38
5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9
5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40
6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42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3
6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44
6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45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45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47
66.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47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47
68.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 (국방부) …	48
6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48
7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49

1.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3. • 마감일자 : 2017. 4. 13.
- 개정 변리사법(' 17.3.21. 공포, ' 17.4.22. 시행)에서 규정한 인가 처리 기간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며, 기타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인가 처리기간 변경 (안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변리사법(' 17.3.21. 공포, ' 17.4.22. 시행)에서 인가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인가 처리기간 반영
- 나. 변리사 자격증 발급 규정 정비 등 (안 제4조의2,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전의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에게도 변리사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사본을 신청인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규정하며, 일부 서식의 인용조항오기 수정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3. • 마감일자 : 2017. 4. 13.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 1)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
- 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1)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하고, 안전교육 운영결과 및 다음해 운영계획 등 제출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1)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 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함

라. 공공시설의 이용신청 절차를 규정함(안제6조)

- 1) 공공시설 이용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제시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3. • 마감일자 : 2017. 4. 13.

-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4. • 마감일자 : 2017. 5. 15.

- 서귀포항 강정지구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강정지구를 제주항 도선구에 포함해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정하려는 것임.

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4. • 마감일자 : 2017. 5. 15.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4. • 마감일자 : 2017. 5. 15.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및 산업 현황,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함.
- 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안 제7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치도록 함.
- 마.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취소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
 - 1) 신기술 인증 대상을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등으로 정함.
 - 2)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대상과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 하도록 함.
 - 3)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예고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취소하도록 함.
- 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안 제20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성과확산,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자료 및 통

계의 관리·활용 등으로 정함.

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4. 4. • 마감일자 : 2017. 4. 7.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수직렬 인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일부 직렬의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 조정하고 일부직위를 복수직급으로 정하려는 것임.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4. 4. • 마감일자 : 2017. 4. 23.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과 아스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복수조합의 담합을 방지하고, 입찰 주체간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 마련
- 가. 레미콘·아스콘 입찰시 복수의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 (안 제3조제1항)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4. • 마감일자 : 2017. 4. 14.
-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법률 제 14091호, 2016. 3. 22. 공포, 2016. 6. 23. 시행)되었고,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4554호, 2017. 2. 8. 공포, 2017. 5. 9. 시행)으로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
에 무상양여 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가 반영(별표 제208호 신설)됨
에 따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양여 등(안 제2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관리청과 그 소재
지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광역
지자체가 해당 부동산을 그 양여 또는 대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10.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5.

○ 석면피해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
한 검사 의료기관(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을 확대하는 한편, 석면
피해 인정기준 중에서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병원
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정기준을 반영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청
년상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청년상인’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12.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4. 10.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4. 10.
-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 하려는 것임.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16.12.2. 공포, ' 17.6.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세부 준수사항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자료보관 기간(2년), 제출서류, 인증결과 보고방법 규정
-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처분기준 정비 및 신설(안 별표2, 별표4 및 별표 14)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처분기준 신설 및 정비
법률에서 위임된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

다.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 및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9호, 제23호 및 제30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시설지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 처리기간 정비(42일→40)및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 폐지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16.12.2. 공포, '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4)
법률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분기준 삭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1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5.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7.3.14.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명확화(안 별표 2의 나 신설)
 - 1) 농업인 자격, 농촌외 거주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또는 수령 행위를 별도로 명시하여 지급제한
-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추가(안 별표 2의 아 신설)
 -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

우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신설

-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지급 제한(5년 이내의 등록제한 등)되어 처벌이 과중했으나 이를 완화해 형평성을 제고

다. 기타 : 의미의 명확화,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한 자구·문구 수정

1) 위반사항 중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와 ‘거짓으로 수령’한 경우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된 지급제한 기준 적용(안 별표 2의 가 개정)

2) 지급제한 규정 이행 공무원의 규정적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고정 직불금 지급제한 대상행위에 대해 변동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을 추가(안 별표 2의 마 개정)

3) 변동직불금 미지급 대상 위반사항 인용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단순화(안 별표 2의 바 개정)

1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6.

○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예외 (안 제20조의2 신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경우, 교육비 환불제 등 환불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상에서 예외로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규정(안 별표3 및 별표 10)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정함

18.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6.
-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규모 (안 제27조의2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교육생 보호 실효성을 강화
- 나.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사유 등 명확화(안 제27조의3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등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기한 명시(안 제6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기한 명시
- 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1)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1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3. 29.
- 장교후보생, 준사관 등 임용시험시(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면접수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

련 조항 추가(제16조의2)

2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4. 5. • 마감일자 : 2017. 5. 1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담당할 경력에 대해 가산점 평정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가산점 평정의 항목별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평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평정자 교육 의무화(안 제5조제3항)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반드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직위 재직자 경력평정시 가산점 인정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전문직위 재직자에게 경력평정시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 범위 제한(현행 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함

다.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안 제23조)

대상 자격증, 대상 점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자격증 평정의 원칙과 제한사유 등만 명시하여,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라. 특정업무 가산점 평정 근거 신설(안 제2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5.11.18.)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할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및 점수 기준 등 세부근거를 마련함

마. 가산점 평정 범위 정비(안 제24조 제4항, 안 25조의2 제1항, 안 27조 제1항)

가산점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하여 항목별 상한을 정비하고, 가산점 총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함

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의 보완(안 제31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점에 사후적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거나, 단순 착오나 누락에 의하여 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4. 11.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직공무원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한 하부조직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4. 16.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 16. 11. 29.)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23. 마린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6.

- 마리아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아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아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아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아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아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아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승인 받지 않고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행규칙 안 별표 3 제3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 마리아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마리아업 등록사업자는 보험만 가입 가능하였으나, 보험이나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도록 함

24.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6.
- 마리아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아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아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아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아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아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아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조제2호 개정)

마리나항만법 제2조제2호에 제도시설을 명시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 추가

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정비(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별표 2 제2호 가목 신설)

마리나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안 별표2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2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4. 26.

○ 수면비행선박(이하 위그선)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실제 위그선을 활용한 실선실습과 모의 조종훈련(시뮬레이터)을 받아야 함

- 그러나, 현재 위그선은 국내 최초 개발, 생산 단계로 시뮬레이터가 개발, 보급되지 않은 상태

또한, 현장에서의 실선 실습은 장비숙달 조작훈련 효과측면에서 시뮬레이터 교육보다 우수하고, 두 교육은 법령 상 교육내용이 동일하므로

- 시뮬레이터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실선 실습시간으로 모의조종훈련 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재, 위그선 본격 생산에 따른 조종면허 수요 발생, 필요경력을 갖춘 대상자 배출 및 필기시험예정('17.4.8) 등으로 면허취득 교육이 시급한 실정

이에, 지정교육기관에 모의비행훈련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모의조종훈련은 실 선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시뮬레이터 장비가 구비될 때 까지 모의조종훈련(35H)시간만큼 실선 훈련시간을 충족할 경우 면허 발급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26.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6.
-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 → ‘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추가로 규정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7.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6.
-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 → ‘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을 수정하고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일괄 수정하고자 함.
점자여권 도입 관련, 점자여권의 발급형식(투명스티커)과 수록정보(여권 번호, 영문성명, 여권 발급일, 여권 만료일)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7.

○ 종전에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70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시켜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2)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나.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 관련 규정 정비

1)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2)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의 교육내용란 중 ‘설치자’를 ‘운영자’로 변경함(별표 4)

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기한 및 결정 여부 통보 방법 등 신설

1)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과징금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함(안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5일 전까

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3항)

3) 식약처장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 및 결정 취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29.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

○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 14264호, '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357호, '17.1.12)됨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 확대 (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등록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기존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수수료 면제 사유 신설(안 제32조 단서신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부과되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함

다. 기능성화장품의 보고서 제출(심사면제)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 10조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추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을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심사면제)에 추가하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라. 염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3)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염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

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마. 탈색·탈염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4)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탈색·탈염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탈색·탈염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바. 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5)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제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30.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6.

○ 특허법 개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36조의2 및 관련 별표)

개정 특허법(’ 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등록취소로 변경

31.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

○ 가.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안 제2조, 제8조의2조, 제8조의4)

개정 특허법(’ 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은 선행기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변경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5. 16.

○ 가. 내성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조의2)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내성균환자 및 내성균보유자의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함

33.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4. 6.
- 마감일자 : 2017. 4. 13.

○ 대관규칙 주요내용이 국악원 내 공연장 대관사무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부령보다는 해당기관 예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립국악원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국악원 예규로 제정하고,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3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5. 17.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국내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4. 14.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가.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안 제46조의3)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6.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5. 17.
-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
- 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및 불허가 사유 및 처리기간 미준수 사유 통보 의무 신설(제4조제3항)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함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 소집통보, 현장조사, 회의준비 등 광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사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신설(제67조제3항)

3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5. 8.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 설치 지부,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부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등 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을 규정

나.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정하고, 조정부의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기준,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 사건의 분리·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

조정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 조정신청 및 조정서류 송달 관련 절차를 규정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5. 17.

○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업무를 포함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시에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고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세무서 중에 한 곳만 방문하여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폐업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4. 17.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공제금액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에도 확대된 1인당 공제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 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6. 7.
-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 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감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와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좌석규격과 보행자 보호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5. 22.
- 공동주택 주차장을 ETQq0.1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안 제19조제1항제27호)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
- 나.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안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제정 및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와 동시에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42.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4. 14.
- 치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개정예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대학원 전담 위원회·등록금·장학금·정원 등 치안대학원의 주요 운영방침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정비하는 한편, 기존에 학사학위과정만 운영되던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박사학위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달리 규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및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43.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4. 17.
- 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

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 나. 2017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4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4. 7. • 마감일자 : 2017. 5. 17.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구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업무를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 나. 지방경찰청장이 공단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제4항)

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5. 22.
-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0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대상 및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수질측정망과 수생태계 측정망으로 구별하여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근거 마련
- 나.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도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구별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다.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안 제23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대상을 부착돌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등 5가지 사항으로 하고, 국가물환경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4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4. 17.

-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직렬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활용범위를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경찰병원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3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9)을 증원하려는 것임

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인) (식품의약품)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5. 22.

- 식품등의 재검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인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명시하여 영업자의 영업활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 등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처리(안 제18조의2, 제58조의2, 제70조의2)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나. 식품등의 재검사 세부규정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식품 제조업 등의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1조)

4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4. 13.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저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대내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856호, 2016.1.27., 일부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이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5. 22.

○ 산림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복지소외자 정의 조문의 기술 상 오류를 수정하고 산림복지진흥 계획의 포함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어 하위법령이 미비된 채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현행 평가 규정의 환류조치를 강화하며, 산림복지의 민간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전문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산림복지소외자의 정의 조문 개정(안 제2조제3호)

- 1) 사회보장위원회 권고('16.5.)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산림복지소외자의 정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용어 변경 하도록 함.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해석 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계획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 1)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산림교육종합계획 등 산림청에서 수립하는 산림복지 관련 법정계획들이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정책효과 및 각 정책 간 연계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2)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법정계획을 포괄하여 작성 하도록 함.
- 3)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법정계획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림복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5조제3항, 제59조제2호, 제60조제2호)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규정 개선(안 제12조)

1) 동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16.2.)에서 새로 도입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에 대하여 관련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로 구분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실효 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조문의 하위법령이 미비 된 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포상 및 미흡사항 시정요구 등 환류조치를 강화하도록 개선함.

3) 하위법령 미비로 운영이 곤란한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1) 산림복지의 민간 산업화를 위하여 처음 도입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하여 등록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제도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제12조)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복지전문업의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관련 조문 정리(안 제32조제4호)

1) 법률 조문의 내용과 해당 대통령령에 위임된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제4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통령령 제35조제2항의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3) 법률과 대통령령의 동일한 내용의 조문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피함으로써 법률체계를 명확히 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추가(안 제37조제1항)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되는 산림복지단지의 경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고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심의단계에서 하위 구성요소인 각각의 산림복지시설의 경우보다 엄격한 타당성조사 및 추가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에 누락되어 개별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중복하여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3)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중복되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 진흥원의 결산 이익금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6조제4항)

1) 현행 법률 상 진흥원의 결산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월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적립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남은 이익금을 고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진흥원의 결산 이익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다른 유사 공공기관과 같이 결산 이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간 형평성 유지 및 진흥원의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5. 22.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한국임업진흥원 대행과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목의 관리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16년 감사원 감사결과(민원처리일수 정비)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등 민원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대행결과 보고(안 제40조의2)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활용에 관한 업무 대행 실적의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무궁화 품종 등 마련(안 제4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할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을 정함
-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2호, 제25호 서식)
 - 등록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하고 변경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함.(‘16 감사원 감사결과)
- 라.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조림지사후관리 계획 및 사업동의서 추가(안 제44조제1항제2호의2, 별지 제34호 서식)
 -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지의 사후관리 계획 포함을 명확히 하고, 보조조림의 경우 조림지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동의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함

5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5. 10.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불법 벌채목재의 교역금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목재(가공품 포함) 거래 시 수출국에 합법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산목재의 합법적 벌채증명을 위한 벌채허가·신고 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전기 공급을 위한 공익목적의 송·배전시설을 시험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9조의2)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특화도시 등의 조성·관리 등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9조의3)
 -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 실태조사의 범위(안 제39조의4)
 -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 민간단체 등의 범위(안 제39조의5)
 -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함
- 마.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관리시스템 운영(안 제4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바. 시험림을 지정 해제 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추가(안 제52조 2항)
 - 법 제47조제4항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송·배전 시설을 추가

5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5. 22.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률(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5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4. 10. • 마감일자 : 2017. 5. 22.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사항 등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정비(안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및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5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1. • 마감일자 : 2017. 5. 22.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 보존의무

및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제공자료를 이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15.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함(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제2 4 5항)
- 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3조제4항)
- 다. 휴업 시 제공자가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제13조제5항)
- 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제공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도록함(제13조제6항)
- 마.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자체보관 하고자 하는 제공자는 관련 서식에 따라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제13조제7항)

5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1. • 마감일자 : 2017. 5. 22.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개정 소요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5항)

나. 제공자가 제공자료 기록 보존 또는 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별표2)

56.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11. • 마감일자 : 2017. 5. 22.
- 현행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 등 어민들은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생태계 보호 등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 단지관리자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신청 및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추가(안 제33조의3 제2항)

5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4. 11. • 마감일자 : 2017. 5. 22.
- 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제한과 의용소방대 대원 정원 상한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단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가. 부대장 연임횟수 제한 완화(제10조 개정)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대장의 경우 연임횟수 제한의 실익 및 필요가 없어 이를 개선
나. 대별 정원의 상한 완화(제11조 개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별 정원의 과도한 제한 완화(본대 60명, 그 외의 경우는 50명을 상한으로 함). 행정구역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대별 조직 및 정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13조 개정)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기존 안정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바로잡음

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 현실화(제22조 개정)

의용소방대간 화합·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를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현실화

마. 개인정보보호 강화(제26조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3.29.)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근거규정 삭제

5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4. 11. • 마감일자 : 2017. 5. 1.

○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강화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시행령 제4조 4호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안 제12조의2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 마련

다.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안 제12조의3 신설)

1)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규정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등록절차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별표 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등록 기준 마련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요 등록절차 규정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제33조의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별표 2 개정)

1) 법률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학습사 배치 의무 관련, 시설 규모를 감안한 구체적 배치기준 마련

5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4. 12. • 마감일자 : 2017. 5. 2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566호, 2017. 2.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체화(안 제2조)

폐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의 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단체(안 제9조)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를 피해자단체 구성원으로 포함함.

라.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검사 결과물 등을 건강피해 인정신청시 첨부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비용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으로 명문화함.

마.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안 제12조 및 제13조)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슴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선후관계 등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정기준 재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또한 폐질환에 의한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시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피해등급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한 피해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제급여 지급(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 지급금액을 정함.

사.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안 제24조)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 전까지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시정을 한 경우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피해가 장기적 또는 영구적 회복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원인제공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등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안 제30조 및 제32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피해자단체나 사업자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및 긴급 의료지원 인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감면대상,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산정 방법, 공동분담금 분담기준, 이의신청 등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산금, 분할납부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차. 조사대상(안 제39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카.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진찰 요구(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피해자가 민법상 배상을 받거나 치유 혹은 사망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 여부 결정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 관리·지원,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지원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파.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인정 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12.
- 마감일자 : 2017. 5. 22.

- 지역의 주된 산업침체 및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위임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회에 매년 지역발전사업 운영현황을 제출해야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제2항제10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4. 12. • 마감일자 : 2017. 5. 22.
-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다가구주택 실(室)별 임대 등록(안 제2조의2)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나.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규모(안 제1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로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면적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 다.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세대수 규모(안 제18조)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는 경우, 해당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수는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전체 주택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
- 라. 지구지정, 지구계획 변경 절차 기준(안 제20조의2, 제24조의2)
 - 1) 촉진지구 지정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촉진지구 면적이 1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함.
 - 2) 지구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없는 경미한 변경은 측량면적에 따른 부

지면적의 변경 등으로 함.

마. 토지의 수용시 동의요건 기준(안 제30조의2)

법 제34조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시, 토지 동의자수 산정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동의대상자 총수의 기준일,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축진지구 내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건축물(안 제31조)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시설물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함.

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안 제33조의2)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모집일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아.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기준 마련(안 제40조)

사용검사전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보증을 가입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6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4. 12.
- 마감일자 : 2017. 5. 2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실업인척 신청을 실시하여 신고·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규정(규칙 제44조)

제3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

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별지서식 정비(제84호, 제85호, 제100호, 제102호, 제105호, 제106호)

6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4. 12. • 마감일자 : 2017. 5. 22.

○ 가. 피보험자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35조)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고용보험법령에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우대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제41조, 제43조, 제47조의2)

고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훈련비용 우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 설정(안 제42조)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액이 없어 납부한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제95조 제5항 신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4. 13. • 마감일자 : 2017. 5. 23.

○ 창업·소상공인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

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의 입찰 시 실적이 없어도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구매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물품과 용역의 실적제한 입찰 폐지(안 제20조제2항 신설)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물품 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1항제2호 삭제)

물품 구매 분야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을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중소업체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안 제6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라.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안 제123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계약 전문기관에서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등 입찰과 계약의 과정에서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입찰 및 계약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4. 13. • 마감일자 : 2017. 5. 23.
- 위원회 신규 설치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해당 부처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제고하며, 운영이 부실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방안 마련 명시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 통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66.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4. 13. • 마감일자 : 2017. 5. 23.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16.6)에 따라 에트회계 용자 업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용자 수혜기관과 용자 관리기관을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용 체계를 마련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용자업무 대행기관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제3조)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4. 13. • 마감일자 : 2017. 5. 23.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등록 취소 규정 명문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절차,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 및 방법, 피해 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68. 육군동원전력시령부령 제정(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13. • 마감일자 : 2017. 5. 4.
-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 작성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6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69. 국방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4. 13. • 마감일자 : 2017. 4. 17.
- 국방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과 창조행정담당관을 창조기획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계획예산관이 분장하던 분석평가 기능을 기획관리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경영분석 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관리관에 진단평가담당관을 신설하며, 예산 사업 중심으로 국방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계획예산관 하부조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정책담당관을 사이버정책담당관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사이버대응기술팀으로 분리하는 한편, 문화활동과 정신전력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과와 정신전력정책과를 통합하고, 다자안보 정책 및 군무원 정책 관리 강화를 위해 다자안보정책과와 군무원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하여 조정하는 한편, 기타 용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4. 13.
- 마감일자 : 2017. 5. 23.

-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산학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재산권은 해외 본교가 아닌 국내 분교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제2조 제2항 개정)
 -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허용
 - 산학협력단, 특별과정, 계약학과,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치(설립) 및 운영 가능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분교(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귀속(제19조 제2항 개정)
 - 산학협력단 설립 등기시, 국내 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이나 분교 산학협력단의 주관하에 창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산학협력단에 귀속시키는 규정 제출산학협력단이 없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도 관련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제31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시, 국내 분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학교기업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하도록 하고, 이를 학칙에 포함